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0가합583600 판결 [계약보증금반환 청구]

전 문

원고주식회사 A의 관리인 B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승

담당변호사 고정우

피고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진우

변론 종결2022. 4. 14.

판결 선고2022. 6.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17.부터 2022. 6.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0.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 1) 원고는 연예 매니지먼트 사업, 영화, 드라마 등의 기획·투자·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원고에 대하여 2020. 7. 8. 서울회생법원 2020회합100087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B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2021. 3. 5. 위 회생절차에 대한 폐지결정이 내려져 그 결정이 2021. 3. 20.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 2) 피고는 광고업, 수출입업,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와 주식회사 D 사이의 부품양도계약 체결

- 1) 피고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2018. 10. 15. 피고 소유인 자동차 재생 부품 및 미분해 수입 자동차 재생 부품(이하 '이 사건 부품'이라 한다)을 D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부품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2) 이 사건 부품양도계약에 따르면 D은 이 사건 부품의 매각대금에 관한 계약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하여야 하고(제2조), 이 사건 부품은 피고가 위탁하여 보관하는 남양주 물품창고 및 여주 물품창고 등에 보관되어 있는데 그 중 남양주 물품창고에 있는 부품들은 D 또는 D이 지정하는 자의 요청에 따라 2019년 3월 이내에 여주 물품창고로 이전하고, 여주 물품창고는 피고가 사용 중인 것으로 D 또는 D이 지정하는 자가 피고에게 별도의 임대계약 또는 위탁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제3조).

다. 원고와 D 사이의 물품매매계약 체결

- 1) 원고와 D은 2019. 2. 1. D 소유의 이 사건 부품을 원고에게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2) 이 사건 물품매매계약에 따르면 일괄 매입 및 일시불 지급의 조건으로 이 사건 부품의 매매대금을

50억 원으로 정하여 이를 계약 즉시 정산하고(제2조), 이 사건 부품은 D이 위탁하여 보관하는 남양주 물품창고 및 여주 물품창고 등에 보관되어 있는데 그 중 남양주 물품창고에 있는 부품들은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와 협의하여 2019년 3월 이내에 여주 물품창고로 일괄 이전하고, 여주 물품창고는 D이 사용 중인 것으로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가 D과 별도의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3조).

3) 원고는 이 사건 물품매매계약이 체결된 2019. 2. 1. D에게 총 65억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원 지급

원고는 2019. 2. 20. 피고의 계좌(기업은행(계좌번호 1 생략))로 25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이체하였다.

마. 원고, 피고, D 사이의 공정증서 작성

1) 원고, 피고, D은 2019. 9. 26. 이 사건 부품양도계약의 해지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이에 관하여 공증을 받았다[공증사무소 법무법인(유한) E, 공증인 공증담당변호사 F, 등부 2019년 제1156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이 사건 공정증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당사자 피고, D, 원고는 2019년 9월 26.일 계약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아래와 같이 계약일부해지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한다. 또 다른 계약당사자인 원고는 D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모든 의무를 연대하여 보증하며, 함께 책임지고, 이행하여야 한다.

특약사항: 또 다른 계약당사자인 원고는 D이 피고에 부담하여야 하는 모든 의무를 연대하여 보증하며, 함께 책임지고, 이행하여야 한다.

1. 피고와 D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부품양도계약의 일부(제3조), 폐기물처리허가에 대한 사용권, G수입자동차 사업부와 계약한 잔존물 및 폐기물에 대한 독점수거권,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라이선스 등 사업에 필요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에 대하여 아래의 조건으로 해지에 합의한다.

1) D은 피고에게 G수거권 등 기타 라이선스에 대한 프리미엄 금 이억원(200,000,000)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2) D은 2019년 H그룹 매입 분에 대한 잔존물 수거비용 240,000,000원(부가세별도)를 지불한다.

2. 계약해지 일자 2019년 9월 30.일로 한다.

3. 계약해지에 따른 정산금액은 240,000,000원(부가세별도)로 하며, 2019년 10월 5.일까지 원고가 피고의 법인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2) 원고는 2019. 9. 30. 피고에게 잔존물 수거비용 및 부대비용의 명목으로 24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바. 원고의 이 사건 금원 반환청구

원고는 2020. 3. 23.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2020. 3. 27.까지 반환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물(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 한다)을 발송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당사는 수입자동차 재생 부품 및 미분해 수입 자동차 재생부품에 대한 플랫폼 개발 용역을 귀사에게 의뢰하였으며, 2019년 2월 20.일 계약금 금 250,000,000원을 귀사에게 지급하였습니다.

3. 위 2.의 의뢰 내용 중 2019년 3월 15.일까지 1차 플랫폼 개발 시안을 당사에게 제출하기로 하였지만, 귀사는 어떠한 플랫폼 개발 시안도 본사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4. 이에 당사는 귀사에 기 지급한 플랫폼 개발 용역비 계약금 250,000,000원에 대한 반환을 아래와 같이 요청 드립니다.

1. 반환요청일 : 2020년 3월 27.일(금)까지

2. 반환금: 일금 250,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2019. 2.경 피고로부터 자동차부품 사업 플랫폼 개발용역을 제안받으면서 피고의 날인이 되어있는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전달받아 이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었다.

그런데 원고의 업무 착오로 인하여 계약이 체결되기도 전에 이 사건 계약서에 계약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250,000,000원이 피고에게로 잘못 이체 되었다. 즉, 이 사건 금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므로 주위적으로 이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2) 설령 이 사건 계약서에 따른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내용증명을 통해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위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예비적으로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금원의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

원고와 D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이다. 원고는 D을 계약당사자로 앞세워 피고와 이 사건 부품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계약에 따른 대금은 모두 원고가 지급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이 사건 부품양도계약이 정한 계약금의 일부로 지급한 것이므로 그 법률상 원인이 있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이른바 착오 송금과 같은 경우에는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앞서 든 증거와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업무상 착오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는다).

① 원고가 제출한 자동차 부품 플랫폼 개발 용역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에는 그 계약당사자가 원고와 피고로, 계약일이 2019. 2. 20.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계약서 말미에는 원고와 피고의 회사명, 주소, 대표이사의 이름이 각 기재되어 있는데 그 중 피고의 대표이사 이름

옆에만 날인¹⁾이 되어있고, 원고의 날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 계약서 상단에는 수기로 "반려건, 5억 세부내역 첨부 건으로 변경할 것(2/21)"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나 이에 따른 계약은 실제로 체결되지 않았다.

자동차 부품 플랫폼 개발자 피고와 플랫폼 개발에 대한 개발비 일체를 지급하고 플랫폼에 대한 지적재산권 일체를 소유하고자 하는 원고는 다음과 같이 플랫폼 개발에 합의하고 본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 본 약정서에 수입 자동차 재생 부품 및 미분해 수입 자동차 재생 부품에 대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원고는 미국의 I과 같은 자동차 부품에 대한 오픈방식의 경매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고자하므로 이 플랫폼 개발에 대하여 피고가 개발하고 있는 J 및 K의 경매방식의 자동차 부품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약정을 체결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계약내용)

① 프로그램 인수 및 플랫폼 제작 비용: 금 오억원정(500,000,000-)

② 계약이행보증금: 이억오천만원정(250,000,000-), 계약 즉시 지급

② 원고의 신규사업본부 본부장 L이 2019. 2. 20. 작성한 "신규사업 진출과 관련하여 플랫폼 개발 및 프로그램 인수에 관한 건"이라는 표제의 기안서(이하 '이 사건 기안서'라 한다)에는 이 사건 계약서를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배경, 개요, 기대효과, 이 사건 계약서에 따른 2019. 2. 20.자 계약보증금이 250,000,000원이라는 점, 피고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피고계좌'라 한다) 등이 각 기재되어 있고, 기안자인 본부장 L을 비롯하여 상무 M, 위원장 N, 대표이사 O의 각 서명이 있다.

③ 원고의 경영관리팀 소속 P가 2019. 2. 20. 작성한 지출결의서(이하 '이 사건 지출결의서'라 한다)는 이 사건 기안서에 따라 250,000,000원을 이 사건 피고계좌로 송금하는 것에 관한 결재를 구하는 내용이고, 여기에 과장, 상무, 대표이사 등의 각 서명이 있으며, 그 입출납확인란에 "지급필"이라는 도장이 찍혀있다. 한편 이 사건 지출결의서의 기재에 따르면 그 첨부문서로는 "계약서, 의견서"가 있는데 그 중 "계약서" 부분에 수기로 "5억 세부내역 추가 후 재작성"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④ 위 각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었을 뿐 실제로 그에

다른 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업무 착오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서와 그에 기초한 이 사건 기안서 및 지출결의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이 사건 금원을 이 사건 피고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보인다.

2) 한편 앞서 든 증거와 사실,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D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서 이 사건 부품양도계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위 계약금의 일부로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부품에 관하여 피고와 D이 체결한 이 사건 부품양도계약, 원고와 D이 체결한 이 사건 물품매매계약은 서로 다른 별개의 계약이고, 위 각 계약의 내용상 원고와 D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라는 점을 추단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으며, 원고와 D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였다면 위와 같이 피고와 각각 별개의 계약을 체결할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가 2019. 3. 5.부터 2019. 6. 10.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부품의 보관에 소요되는 비용 66,440,000원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공정증서가 "또 다른 계약당사자인 원고는 D이 피고에 부담하여야 하는 모든 의무를 연대하여 보증하며 함께 책임지고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부품양도계약 제3조, 이 사건 물품매매계약 제3조에 따라 원고가 매수한 이 사건 부품이 피고가 사용하는 여주 물품창고에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에게 이 사건 부품의 보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정증서는 이 사건 부품양도계약의 해지로 인한 법률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이 사건 부품양도계약의 당사자를 피고와 D으로 명시하면서(제5항) 주로 피고와 D의 의무를 정하고 있고(제1항, 제4항, 제5항),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상 "또 다른 계약당사자"로 표현되기는 하였으나 D이 피고에게 부담하는 의무를 연대하여 보증할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품양도계약의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 피고는 이 사건 물품매매계약의 수익자 지위에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볼 증거가 없고, 이 사건 부품양도계약의 체결일인 2018. 10. 15.과 이 사건 금원의 지급일인 2019. 2. 20.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이 사건 부품양도계약이 정한 계약금은 5억 원으로 이 사건 금원인 2억 5천만 원과 그 액수에서도 차이가 나는 점, 원고는 이 사건 물품매매계약에 따라 2019. 2. 1. 이미 이 사건 부품을 관한 매매대금 50억 원 전액을 D에게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의 지급을 통해 이 사건 부품양도계약상의 계약금 지급이 갈음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20. 10. 1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2. 6.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19. 2. 20.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상사이율인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는데, 이 사건 금원의 반환을 요청한 이 사건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하였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분이 송달된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또한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상행위를 원인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지연손해금에 상사이율을 적용할 수 없는바, 위 인정범위를 넘어서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허준서

판사김진하

판사염정원

1) 피고는 위 날인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